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 11.30.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5. 11.17.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15. 11.20.
다. 상정일자 : 제20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위원회 (2015. 11.30.)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도시계획과장 엄 기 창

가. 제안이유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위임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 마련

2) 행정자치부 주관 "경제단체와 함께 푸는 규제혁신 대토론회" 회의(2015.6.12.)시 요청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위원회 안건 심의기간과 반복심의 횟수 제한 기준을 미설정한 지자체는 조례를 개정토록 요청

나. 주요내용

1)「국토교통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에 의거 안건 처리기한과 반복 심의 횟수 설정 (안제6조의2)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3항에 의거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려면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를 거쳐야 함 (안16조)

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3조제2항에 의거 우리구 도시·건축공동계획위원회의 구성방안 마련 (안17조)

4)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각 위원회의 임기를 준용 (안18조)

5)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계획조례」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운영방안 마련 (안19조)

6) 기타 일부 조문 정비

3. 검토보고 (김용범 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위임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안 제6조의2)에서 「국토교통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에 의거 안건 처리 기한과 반복 심의 횟수 제한 기준을 설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에 의거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려면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를 거쳐야 함에 따라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7조)에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3조제2항에 의거 우리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각 위원회의 임기를 준용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계획 조례」 제3조에서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운영방안을 마련하였음.

따라서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 사항을 정비하고 그 밖의 사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과 용어를 어문규정에 맞게 수정하여 구민들에게 알기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정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 추진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 타 : 없음